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소개

지방자치제도는 인구가 크게 늘고 주민의 관심 영역이 다양해지는 한편, 바쁜 생활 때문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대표로 뽑은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관할 구역, 주민, 자치권을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 구분

관할 구역에 따라 서울특별시(1)·직할시(5)·도(9)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시·군을,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 구역안에 자치구를 두고 있는 시(67)·군(137)·구(56)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의회 의원은 시·군·자치구마다 3인을 뽑되 직할시는 최소 23명, 도는 최소 17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때 30만명을 넘는 시·군·자치구는 30만명을 초과하는 20만명까지마다 1명씩 더 뽑고, 인구가 7만명 미만인 시·군·자치구는 2명으로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회 의원은 읍·면·동마다 1인을 뽑되 최소 7명 이상이고, 45명 이하가 되도록 하며, 70만명이 넘는 시·군·자치구의 의원수는 50명으로 한다. 이때 2만명을 넘는 읍·면·



동은 2만명을 초과하는 2만명까지마다 1명씩 더 뽑는다.

따라서 광역의회 의원의 선거구는 866개 선거구에 866명의 광역의회 의원을 선출하며,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1인 선거구가 2,844개, 2인 선거구가 695개, 3인 선거구가 22개, 4인 선거구가 1개이다(기초의회 의원 수는 4,304명이 된다.)

● 자치권

– 자치 입법권: 국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 자치 조직권: 자치단체가 집행기관인 도·시·군청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규칙 등으로 하부 행정기구의 결정,

직속기관·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의회 위원회 설치,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등 그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 자치 행정권: 자치단체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고유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권한이다.

– 자치 재정권: 자치단체가 고유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는 권능으로 주민은 각종 지방세나 자치단체시설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비부담의 의무를 갖게 된다.

●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키는 사항 등에 관

註1. 지방세의 종류

- 특별시·직할시세(10):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마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도세(4):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 시·군세(10):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 자치구세(4): 면허세, 재산세, 종합세, 사업소세

한 조례 제정

- 주민이 내는 세금 등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심의·의결
- 자치단체의 재산 취득·처분 및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부과 징수 승인
- 지역 주민과 관계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의 심사·처리
- 지방행정이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조사의 실시
- 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역 행정 전반에 대한 처리 상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요구
- 기타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의 처리 등이다.

그러나 지역내 대소사의 집행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지휘하에 있는 집행기관인 도·시·군·구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규모있게 잘 세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자치단체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역행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등을 감시하고,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기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을 건의하는 일도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된다.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의회는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회는 시·도가 처리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처리한다.

- 또한 광역의회에서는 상설기구로 사무국을 두고 서기관급 사무국장 1명과 의회 규모에 따라 23~33명의 사무직원을 두고 있으나 기초의회에는 간사와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예산안 제출·의결 등의 기한이 다르다. 광역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예산안을 제출 받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해야 하나, 기초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제출받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 광역의회의 권한과 대우가 기초의회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나 양자의 관계는 상호 독립된 대등한 수평관계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에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도·조언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감시 기능과 견제를 통하여 기초의회의 권능과 기능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6)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비교

구분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수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명. 인구 30만이상 20만까지 1명 추가	행정동마다 1명. 인구 2만 이상 2만씩 추가될 경우 1명 추가
의원임기	4년	
신분	명예직.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없음	
주요 권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예·결산 확정 및 승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기입금의 부과 및 징수,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 행정 사무의 감사 및 조사, 청원의 수리 및 처리	
회의	매년 12월 1일 정기회(30일 이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1/3이상 요구로 임시회(10일 이내)	
회의 일수	연간 1백일까지 가능	연간 60일까지 가능
의장단 임기	2년	
의장단 구성	의장 1명, 부의장 2명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의원회 설치	상임위와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만 가능
의사 정족수	재적 1/3이상 출석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안 발의	재적 1/5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 또는 자치단체장 발의	
실무 책임	사무국장	사무간사